

2019. 7.26.~ 7.30./5일간

제30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장 성 군 의 회

심 사 결 과

의 안 명	심사결과
장성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누리타운 관리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본회의 부의하지 않음

주요내용

1. 장성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9. 7. 15.
- 제 안 자 : 장성군수(주민복지과장)
-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19. 7. 1.시행)에 따라 기존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되어, 장애등급 관련 용어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별표의 1순위의 장애인란 중
 - 1급부터 2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같은 표 2순위의 장애인란 중
 - 3급부터 6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같은 표 3순위의 장애인란 중
 - 장애등급 1~6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별지 제1호 서식
 - 장애등급 ⇒ 장애정도
 - 장애등급 2급이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 장성군 사랑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9. 7. 15.
- 제 안 자 : 장성군수(주민복지과장)

■ 제안이유

실버주택 건립으로 무주택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주거지원 폭이 늘어남에 따라 사랑의 집 공실률을 줄이기 위해 입주자격을 완화하는 등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함

※ '19년 7월 현재 공실 5개, 3차례 걸쳐 모집공고 및 수시모집으로 진행했으나 미 접수(자격기준(거주기간) 미달로 신청 불가사례 발생)

■ 주요내용

- 사랑의 집 입주자격 중 장성군 계속거주기간 “5년 이상” 에서 “3년 이상” 으로 완화(안 제7조제2항)

■ 의결결과 : 원안가결

3.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누리타운 관리지원 조례

■ 제출일자 : 2019. 7. 15.

■ 제안자 : 장성군수(주민복지과장)

■ 제안이유

공공실버주택은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최초로 건립된 영구임대아파트로서 장성군 무주택 저소득 어르신들의 주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급하였으나, 관내 타 아파트에 비해 관리비가 높은 편으로 공급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부담완화를 위한 사업주체 차원의 관리지원 필요

■ 주요내용

- 공공실버주택 관리지원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1조, 제2조)
- 공공실버주택 관리에 따른 지원내용 및 방법 (안 제3조, 제4조)
 - 공용전기요금, 시설안전관리비용, 관리인력 및 인건비 지원
- 공공실버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안 제5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4. 장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 제출일자 : 2019. 7. 15.

■ 제 안 자 : 장성군수(주민복지과장)

■ 제안이유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군비로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으로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안 제3조 ~ 제4조)
- 서비스 제공기관(안 제5조)
- 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안 제6조)
- 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안 제7조 ~ 제8조)
- 준용(안 제9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5.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출일자 : 2019. 7. 15.

■ 제 안 자 : 장성군수(재무과장)

■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여 운영 중인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상위 법령과 부합하지 않거나 최근 개정법령의 미적용 된 사항을 정비하고,
- 정부 일자리 정책과 관련 미취업 청년들의 창업,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 사항을 신설하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함.

■ 주요내용

- 광석·토석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토석 등의 채광물 채취료 산정 방식개선(안 제30조제1항)
 - － 「산지관리법」 제35조에 정한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
- 일자리정책 관련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지원을 위해 공유재산을 사용대부할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조항 신설(안 제32조제2항)
-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사회적 경제기업 또는 조합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할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조항 신설(안 제32조제3항)
- 법령 개정 및 폐지,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에 따른 관련 근거 반영
 - －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폐지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적용(안 제20조의2제2호)
 - －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개정(안 제31조 제3항, 제4항)
 - －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농경지 수의매각 대상을 농업인으로 개정(안 제40조제7호)
- 상위 법령 위임 범위 일탈 및 중복 조항 삭제
 - － 공유재산심의회 용도 변경·폐지 심의 생략 조항 삭제(안 제5조제2항4호)
 - － 신탁의 종류에 대한 위임규정 없어 삭제(안 제4장제3절제41조)
 - － 청사의 부지에 대한 위임규정 없어 삭제(안 제6장제46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6.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 제출일자 : 2019. 7. 15.

■ 제 안 자 : 장성군수(재무과장)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노인회관 신축사업

- 어르신들의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노인회관을 신축하여 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 다양한 여가프로그램 제공으로 노인회의 활성화 유도과 실버복지1번지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1) 위 치 :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899-6 외 3필지
- 2) 사업규모 : 건축면적 661㎡(부지 1,432㎡) / 지상2층
- 3) 예상사업비 : 2,000백만원(공사비)

※ 신축부지 : 1,052백만원(주차장 조성부지 활용)

나. 앵무새 상설 체험 전시관 조성

-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황룡강 내 방문객에게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는 반려새(앵무새 등) 체험관을 설치하여 사계절 관광객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1) 위 치 : 장성읍 기산리 474-1 및 475-1번지 일원
- 2) 사업규모 : 앵무새 상설 체험 전시관 조성(부지 27,201㎡)
- 3) 예상 사업비 : 6,417백만원

- 토지 매입비 4,417백만원 / 건물신축비 2,000백만원

■ 의결결과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음